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나6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나65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소35747 판결

전 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6. 5

판결 선고 2020. 7. 3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소3574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 1내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년경 경북 의성군 C 에 소재한 섬유공장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과 그에 따른 감정이 필요하였다.

나. 피고는 2010 . 5. 초순경 원고에게 위 섬유공장에 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감정평가 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감정평가 작업비용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0 . 5. 3. 경 70만 원, 2010 . 5. 27. 400만 원, 2010 . 6. 4. 450만 원, 2010 . 7. 중순경 720만 원 합계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감정평가 작업을 전혀 하지 아니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원 지방법원성남 지원은 2011. 10. 31.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 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2011 고정2034) 은 2012 . 2.23.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선고를 하였고, 항소심인 수원 지방법원(2012노1115)은 2012. 4. 19. '피고인(피고)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대법원(2012 모 802)은 2012. 5. 22.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감정평가 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반환하여야 하거나, 피고의 위기망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감정평가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장부지의 소유자를 만나 감정평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그 소유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다투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감정평가 작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작업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인 164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판사 권 희판사 이일영